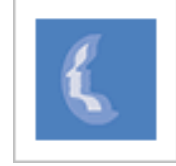


■ 호주 -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The Federal Privacy Commissioner)

바로가기 ⇒ <http://www.privacy.gov.au>

메일보내기 ⇒ privacy@privacy.gov.au



호주는 2003년 현재 인구 1,955만명의 연방국가로서, 일찍이 1988년에 연방프라이버시법(The Federal Privacy Act 1988)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호주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州)마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호주를 대표하는 개인정보보호기구는 바로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이다. 호주의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2001년 국제정보보호커미셔너회의에서 '자격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구'로 인정받은 것은 물론, 올해 9월에는 제25차 국제정보보호커미셔너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진 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호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

구분	기관명	
연방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	
Territory		
주	퀸즈 랜드	주 정부(법무부)
	뉴 사우스 웨일즈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빅토리아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타즈마니아	주 정부(법무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 위원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법무부)

1.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지위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는 1988년 프라이버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래, 몇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권한과 규율대상이 확대되면서 명실상부한 호주의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로 발전하였다. 특히 2000년 프라이버시법 개정으로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의 규율영역이 민간영역까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그 권한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할 것이다.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총독(Governor-General)에 의해 임명되는 독립기관으로, 임기는 7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커미셔너는 위원회의 업무결과에 대해 의회 및 수상에게 직접 보고하며, 타 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법정기구이다.

2. 관장법률

커미셔너는 연방 및 수도행정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일부 민간영역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1988 프라이버시법 외에도 형법(Crimes Act 1914), 데이터대조프로그램법(Data-matching program Act(Assistance and Tax) 1990), 국민건강법(National Health Act 1953),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7) 등의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이 중 1988 프라이버시법은 호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며, 각 영역을 위한 정보보호원칙(IPPs, NPPs)을 포함하고 있다.

3. 업무범위

연방국가인 호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분담도 연방과 주에서 각각 나누어 맡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주 차원의 문제는 주 정부 또는 주에서 설립한 프라이버시커미셔너가 담당하며,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는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문제를 다루게 된다.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일차적인 관할영역은 바로 연방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커미셔너는 연방 및 특별수도행정지역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연방 프라이버시법 이외 데이터대조프로그램법이나 국민건강법 또는 형법 등에 따라 데이터대조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감독 및 의료정보의 보호, 범죄기록의 보호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외에도 커미셔너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의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개인, 법인, 파트너십, 비법인단체, 트러스트 등에 의해 수집·이용·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감독한다. 특히 2001. 12. 21일부터는 과거에는 관할영역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업자 중 의료서비스제공업자, 개인정보거래사업자, 대규모 사업자의 협력업체, 연방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됨에 따라, 커미셔너의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 및 조직에 의하여 이용되는 개인세금파일번호와 신용정보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임무 중 하나이다.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업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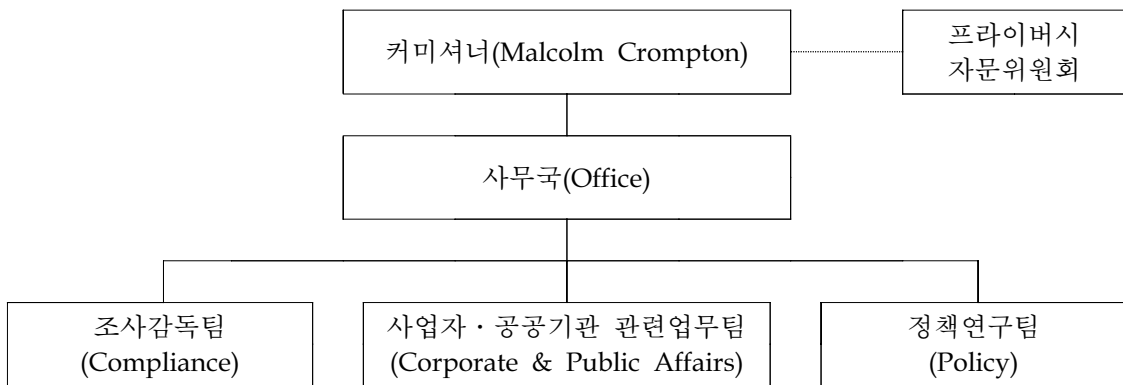
구분	세부업무범위
공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및 ACT 정부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의 세금정보보호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형법(1914)에 의한 범죄기록보호 · 호주 국세청 등의 세금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대조 프로그램 사용 규제 · 의료보험위원회 및 보건당국에서 수집·보유한 의료정보의 보호 · 법집행기관에의 개인정보 제공 감시
민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법인, 파트너십, 비법인단체 등 민간단체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 개인 및 민간단체에 의해 이용되는 개인의 세금정보보호 · 신용기관 및 신용업자가 보유하는 신용정보보호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 operator) : 예외 有 · 정당 및 언론단체 · 현 사용자 또는 이전 사용자에 의해 보유되는 근로자 정보

4. 조직구성

동 기구는 커미셔너 1인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조사감독팀, 사업자·공공기관 관련업무팀, 정책연구팀으로 나뉘며 2003년 현재 직원은 약 40명이다. 조사감독팀은 개인정보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주로 행하며 사업자·공공기관 관련업무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실시 및 기관의 활동에 대한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며, 정책연구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연구를 행한다.

또한 별도 조직으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를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Privacy Advisory Committee)'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연방 프라이버시법에 의하면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는 커미셔너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3년 현재는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명권자는 수상이며 위원의 임기는 5년이나 국회의원일 경우에는 의원임기에 따른다. 자문위원회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연방프라이버시감독관에게 자문을 행하며, 연방프라이버시감독관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주요 관련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호주의 사업자 및 정부에게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프라이버시커미셔너 조직도>



5. 주요 기능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는 크게 ① 분쟁조정 또는 강제력 있는 결정을 통한 개인정보피해 구제, ② 개인정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의 법규준수여부 내지 개인정보침해여부 조사·감독 ③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규약(Code of Conduct)의 심사 및 승인, ④ 개인·정부·민간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와 지침 제공, ⑤ 개인정보 관련 입법 및 정책자문, ⑥ 개인을 비롯하여 특히 사업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⑦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 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 협력 등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주요기능과 업무>

주요기능	세부내용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핫라인 구축을 통한 상담 및 이의제기 신청접수 · 민원신청에 따른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여부 사실조사 ·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 커미셔너의 공식적 결정(determination)을 통한 민원처리 및 해결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접근권 행사 지원 및 보호
조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법규 준수여부 감독 · 법규위반 확인시 검찰 등 해당기관 이첩 · 공공기관의 데이터대조프로그램 사용현황 조사·감독
프라이버시 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 규약(Code of practice) 심사 및 승인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사업자, 정부에 대하여 각각 정보제공 · 각 영역별 지침 제공
정책 및 입법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시 프라이버시 관련 부문에 대하여 심사 ·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의견제시 및 자문
개인정보보호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관련 기술 및 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수행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 언론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활동 등 홍보
유관기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 해외 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 국제협력